



# 보도자료



2019년 11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8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18. (월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3-870-5450)	담당자	배종수 연구관(043-870-5574) 신상훈 사무관(043-870-5451) 백희선 주무관(043-870-5460)

**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 
전동킥보드,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**  
- 산업부, “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” 고시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,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·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, 중복된 시험·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한다.
- 국가기술표준원은 '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, 그 일환으로 우선 전동보드(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), 건전지, 휴대용 사다리,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,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< 전동보드 >

- 기존에 통합하여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(手動)방식과 전동(電動)방식으로 분리하여,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

기준 내용도 강화하였다.

-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'스케이트보드' 안전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,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'전동보드'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하였다.
  - 그리고,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.
- \*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(25km), 제동성능, 주행안정성, 방수성능,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

### < 어린이 놀이기구 >

- 어린이놀이기구는,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하고,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하였다.
- 즉,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(그네, 미끄럼틀 등)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(조합놀이대)을 제작할 경우,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,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·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< 중복 화학물질 검사 면제 (예시) >



- 또한,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,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하였으나,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.

< 건전지 >

-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 『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』 이행을 위해,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‘건전지’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.
-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,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(수은, 카드뮴, 납)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.

< 건전지 제품 (예) >



< 휴대용 사다리 >

○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‘가정용’으로 명시하고,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였으며,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(스텝 스텔)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하였다.

-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,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(높이 2m 이하), 보통 사다리(길이 10m 이하), 도배용(높이 1.2m 이하), 원예용(높이 3m 이하), 계단식 소형 사다리(높이 1m 이하)로 구분된다.

< 계단식 소형 사다리(스텝 스텔) 제품 (예) >



### < 빙삭기 >


○ 빙삭기(수동식 빙수기)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,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‘얼음에 직접 닿는’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하였다.

□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, 어린이 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, 전전지는 고시 1년 후,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,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.

○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“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

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”고 밝히면서, “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,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 인증마크(☞)와 표시사항을 확인”하기를 당부하였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배종수 연구관(☎ 043-870-5574), 신상훈 사무관(☎043-870-5451), 백희선 주무관(☎ 043-870-54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